

보건담당자의 포부



태화섬유(주) 건강관리보건담당자

박 연 옥

우리나라에서 자못 소외당하기 쉽고 눈가림으로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이들이라면 아마 저임금 근로자들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회사는 주로 여성 근로자들이다. 일부는 일반 근로자들이고 또 일부는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이들 청소년 또는 일반 근로자들의 식사의 영양상태, 공동식사의 청결성의 문제, 시끄러운 소음과 탁한 공기와 햇빛을 쏘이지 못해 V_D생성이 힘든 작업조건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많은 노동시간으로 인한 피로의 축적등으로 인하여 질병을 자주 초래할 때가 많다.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이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상태의 배려, 식사의 청결, 정성을 내걸고 되도록 소음을 적게 하고 환풍기, 충분한 점심시간 또 중간 휴식시간을 주는 등 다양한 배려를 하지만 그들의 심신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쇠약한 것은 사실이다. 일단 질병이 나면 응급처치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그 원인을 찾아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질병이 산업장의 작업조건 및 환경에 의해서 온전지 음식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의 건강상태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여 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질병

이 발생하면 진단의 확인, 유행존재의 확인, 발생시간에 대한 검토, 지역적 분포에 대한 조사, 인적사항에 대한 조사, 유행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선정하여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인데 실지로는 그 초기에 유행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산업내의 유행병 발생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질병이 나면 환경조건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서 병이 나는 수가 많지만 외상이 아닌 이상은 자기부담치료로 하고 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요원이 산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응급처치요원이 없을 시에는 산업장의 근로자가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지식을 건강관리 담당자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1년을 주기로 어떤 시기에 어떤 병이 어떻게 발병되고 있는지를 잘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양케이트를 조사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뭘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원래 국가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산

업장의 유해부서 근무자로 하여금 노동부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검진팀에게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또한 산업장 유해부서는 년 2회 작업환경측정을 받게 하고 있다. 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장은 보건 관리자를 두게 하였지만 특수전문부분의 인력 및 산업보건에 요구되는 특수기재 또는 관련부서의 인식 부족 등으로 산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업무는 안전보건법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보건담당자는 근로자의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건강진단의 실시,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교육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과 기타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보건관리자의 일을 돋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산업보건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산업장내 근로자들의 건강 그 자체를 유지 증진시키는 일인 이상 직업성이 아닌 일반 질환에 대한 예방과 감시업무가 절대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질환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산업장의 보건관리업무의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는 보건관리자 주관하에 매년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유해부서의 특수건강진단이라고는 하나 그 실시가 일시에 많은 피검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으며 또 특수검진에 요구되는 의료기자재 시설이 따르지 못하는 등 자연히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검진이 되어 버리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검진때의 단점을 보완하여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시 반복되는 증상이 있을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취약한 장기계통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체용시 건강진단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체용시 법 청검사항목으로는 기왕력 및 작업경력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 혈압, 전혈비증, 요당, 요단백, 체중, 시력, 청각, 신장, 색신 및 혈액형, 흉부X선검사를 해야 하는데 실지는 체용시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건강진단의 실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진단의 결과가 나왔으면 산업장에 있어서의 보건관리의 실무는 질병예방을 대책하고 노동이 적성에 맞는지 노동력의 손실이 없는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동조건이나 작업방법, 작업환경 또 원자재의 질적, 양적인 변화가 격심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이 여려면에서 복잡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 건강진단이야말로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정부에서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국내 최초의 요양 및 휴양시설인 근로복지공사 화성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이와 같은 기관이 많이 생겨 산업재해자들의 안식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좀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고충상담 및 재취업 상담 취업정보의 제공 알선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거듭 말하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영양이 풍부한 급식, 쾌적한 환경조건, 편리한 작업조건, 체용시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주기적 건강진단의 실시, 근로복지공사기관의 확충 등을 좀더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서 그들의 건강을 좀더 최선을 다해 지켜줄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